

## 7. 창업학점제

- 1) 목적 :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실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 2) 교육과정 편성
  - 가) 창업학점제 신청은 해당 학생이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와 지도교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교육과정으로 인정
  - 나) 창업학점제는 실제로 창업을 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창업단계와 창업 후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짐
  - 다) 창업학점은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한 학기에 1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최종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학점을 부여함
  - 라) 기 창업자는 창업이후의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됨
  - 마)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3) 강좌개설
  - 가) 창업학점 강좌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 학생이 창업아이템과 관련분야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추천할 수 있음
  - 나) 창업학점 개설은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를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기타 창업학점 개설에 필요한 사항
- 4) 창업학기 이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
  - 가) 신청자격: 재학 중인 자로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나) 신청서 제출: 창업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제출서류
    - (1)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및 이수학점 수
    - (3)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차별 수행계획서(학생용) 및 진도표
    - (4) 창업학점 강좌를 담당할 지도교수 추천서
    - (5) 기타 과정별로 대학에서 요구한 서류
    - ※ 창업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대상자 선발 : 창업학점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5) 수강신청
  - 가) 창업학점 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사지원실의 통보 후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나) 학기 중 창업학점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간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취소 함

6) 창업학점 이수

가) 창업학점은 재학 중 16학점까지 선택과목(교양 또는 전공)의 졸업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

나) 창업학점 신청학생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창업활동의 성과물(매출액, 고용인원, 지식재산권 등)을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며, 패스 “P” , 미패스 “NP” 로 표기함

다) 창업학점은 성적표에 창업이라 표시하고 해당 학점과 판정을 기록

라) 창업학점제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k-Startup 창업에듀(<http://k-startup.go.kr/edu>)에 개설된 패키지 과정 중 전주대학교 창업학점제로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선택 및 수강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함

마) 지도교수는 학생이 창업학점제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사업 추진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제출

바) 사업계획서의 진도표에 의거 진척도가 부족하여 “NP” 를 받는 경우 재이수를 하여야 함

7)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준수사항

가) 의무사항

(1)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중간고사기간(8주차)에, 결과보고서를 기말고사기간(15주차)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창업학기 이수기간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창업학점제 이수 기간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